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00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양문석·정태호·이건태

김현정 · 장철민 · 민형배

오세희 · 김문수 · 김원이

이기헌 • 조계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비상사태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계엄 선포 요건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계엄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계엄 선포 요건을 '무력이 수반된 상황'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계엄 해제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계엄법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곤란한 경우에"를 "곤란하며, 무력이 수반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를 "확보할 수 없으며, 무력이 수반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로 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결의한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엄을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계엄을 해제하 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2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			
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			
히 <u>곤란한 경우에</u> 군사상 필요	곤란하며, 무력이 수반된		
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u>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u>		
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③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			
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확보할 수 없으며, 무력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수반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위하여 선포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 ③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결의		
	한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엄을 해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계 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